

## 산지일시사용 현황

기관명 :

년 월 현재

용도별		합 계(A+B+C)				산지일시사용협의(A)				산지일시사용허가(B)				산지일시사용신고(C)			
		건수	면적(m <sup>2</sup> )			복구비(천원)	건수	면적(m <sup>2</sup> )			복구비(천원)	건수	면적(m <sup>2</sup> )			복구비(천원)	
			소계	보전	준보전			소계	보전	준보전			소계	보전	준보전		
합 계	금 회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
광 물 의	소계																
	노천 채굴																
채 굴	굴진 채굴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
광해방지 사 업	금 회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
신 재 생 에 너 지 시 설	소계																
	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																
	풍력 발전 시설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
농림어업용 시 설	금 회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
진 입 로 임도·숲길 등	금 회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
산림관상 식물재배	금 회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
그 밖의 시 설	금 회																
	누 계																

### 작 성 요 령

1. 조사대상: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, 숲가꾸기, 벌채 및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산지일시사용 현황
2. 작성요령
  - 가. 광물의 채굴: 채굴 및 부속시설 용지
  - 나. 광해방지사업: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
  - 다. 신재생에너지시설: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
  - 라. 농림어업용시설: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1호의 시설
  - 마. 진입로, 임도·숲길 등: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진입로·임도·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·숲길·산길 등
  - 바. 관상산림식물재배: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3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
  - 사. 그 밖의 시설: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시설